

교통기본법안 (염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82
----------	-------

발의연월일 : 2026. 7. 27.

발 의 자 : 염태영 · 손명수 · 최혁진
정준호 · 허 영 · 이강일
전현희 ·朴芝源 · 김동아
안태준 의원(10인)

제안이유

교통과 관련된 현행법은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개발·운영하기 위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교통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교통관련 정책들이 분절적으로 수립·시행되고 있고, 국민소득 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교통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편안한 일상생활을 위한 이동권 보장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그동안의 교통정책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수립되어 왔으며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국민이 느끼는 효용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통관련 각종 계획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교통기

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교통정책이 유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최저 교통서비스 기준을 설정하는 등 교통약자와 교통 불편지역의 주민 등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을 이용하고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모든 국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교통시설 및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짐(안 제3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20년 단위의 국가교통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10년 단위의 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의 균형발전 및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20년 단위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효율적 교통체계의 구축,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 등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을 교통서비스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교통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정책의 수립·시행 및 교통권 보장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이란 사람 또는 화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행위, 활동, 기능 또는 과정 등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전거·자동차·열차·항공기 및 선박 등을 말한다.
3.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철도·공항·항만·터미널 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보조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4. “교통체계”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통수단, 교통시설 및 교통운영과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를 말한다.
5. “국가기간교통시설”이란 지역 간 간선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고속철도,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

다.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라.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6. “국가기간교통망”이란 국가기간교통시설이 서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신속·안전·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한 교통망을 말한다.

7. “교통서비스”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을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

8. “최저교통서비스”란 국민의 일상생활과 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교통서비스로서 제29조에 따라 설정된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충족하는 교통서비스를 말한다.

9. “지속가능 교통체계”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교통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에 기초하여 사람·화물 등의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 등 교통의 발

전을 이루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10. “대중교통”이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교통수단 및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11. “교통산업”이란 육상·해상·항공 교통체계의 개발·운영 및 관리 등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말한다.

12. “교통사업자”란 교통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교통권) 모든 국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교통시설 및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이하 “교통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교통체계의 효율성, 안전성, 지속가능성 및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합적인 교통정책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반 및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의 날) ① 교통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성숙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14일을 교통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통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교통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7조(국가교통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20년 단위의 국가교통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마다 수립하되, 제13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교통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국가교통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및 단계적 추진전략
3. 대중교통의 체계적 육성 및 교통시설 설치·확충에 관한 사항
4. 최저교통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

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하 “교통약자”라 한다)에 대한 교통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6.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7. 지속가능 교통체계의 발전에 관한 사항

8. 교통산업의 육성 및 교통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가교통정책 및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계획 사항을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대중교통기본계획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3. 「교통안전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도교통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시·도의 교통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도교통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16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에 수립할 수 있다.

② 시·도교통기본계획은 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교통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및 단계적 추진전략
3.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의 체계적 운영 및 교통시설 설치·확충에 관한 사항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6.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사항
7. 지속가능 교통체계의 발전에 관한 사항

8. 관할구역과 인접한 지역의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과의 연계 및 효율성 증진에 관한 사항

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관할구역의 교통정책 및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도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시·도교통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도지사는 시·도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고,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도교통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시·도지사는 시·도교통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계획 사항을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방대중교통계획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3.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 지방교통

물류 발전계획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제9조(시·군교통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는 기본계획 및 시·도교통기본계획에 따라 10년 단위의 관할 구역의 교통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군교통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16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군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시·군교통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군수는 시·군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시·군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군교통기본계획에 제8조제6항 각 호의 계획 사항을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⑤ 시·군교통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균형발전 및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20년 단위로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 여건의 전망과 교통 수요의 예측
2. 종합적인 교통정책 및 교통시설투자의 방향
3. 국가기간교통망 및 연계교통체계 구축의 목표와 단계별 추진전략
4. 국가기간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연계수송체계
5.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원 확보의 기본 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
6. 연계교통체계의 구축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등
7. 교통관련 기술의 개발 및 활용
8. 국가기간교통망과 다른 나라 교통망 간의 연계운영·개발 및 협력
9. 그 밖에 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검토에 필요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계획안을 제출하

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검토하여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기본계획 및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 및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물류 관련 계획보다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제5조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3.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5.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6.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물류 관련 계획
- ④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계획의 수립 또는 검토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시기 또는 검토시기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물류 관련 계획이나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다음 각 호의 계획 사항을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

계 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6조에 따른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

제12조(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국가교통에 관한 중요
정책 등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교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교통정책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2. 국가교통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통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4.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집행 실적 평가
7.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3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기
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9. 교통체계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10.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그 밖에 국가교통정책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된다.

③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당연직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제14조(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국가교통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분야별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안전에 대한 검토·조정

2. 국가교통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제15조(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방교통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소관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국가교통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등 국가교통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교통조사(이하 “국가교통조
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국가교통조사의 시행과 조사 결과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교통조사의 목표 및 전략,
세부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국가교통조사계획을 국가교통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 및 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2. 「지방공기업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 중 교통시설의 개발·운영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공사 또는 공단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
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제18조(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
산업의 육성 및 교통관련 기술의 혁신, 교통권의 보장 및 제29조제3
항에 따른 최저교통서비스의 조사·평가 등을 위하여 교통빅데이터
플랫폼(데이터의 연계·융합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하면서 수집

· 관리하는 데이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데이터의 범위, 제3항에 따른 데이터 수집·관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협회의 설립) ① 교통 관련 기업, 그 밖에 교통활동과 관련된 자는 교통체계를 효율화하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교통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정관, 사업, 설립인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교통정책의 기본방향

제20조(효율적 교통체계의 구축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육상·해

상·항공 등 부문별 교통체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교통체계 간에 효율성·통합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교통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교통체계의 기능 증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1조(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서비스의 개선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교통시설 등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지속가능 교통체계의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및 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교통수요의 감축, 기존 교통체계의 활용, 저탄소 교통수단의 보급 확대 등 지속가능 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교통안전의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교통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교통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교통을 매개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교통관련 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통산업 발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교통기술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기술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개발·보급·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국제협력의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정책 개발, 전문인력 교류, 교통기술의 개발 및 협력, 공동조사·연구 등에 관하여 외국정부 및 기관과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8조(교통권의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통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의 일상생활과 문화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교통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교통권 보장을 위한 기반조성

제29조(최저교통서비스 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교통서비스의 기준(이하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서비스 제공실태 등에 관한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평가를 위한 자료의 체계적 수집 및 분석, 관리 및 공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교통서비스개선대책의 수립·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3항에 따른 교통서비스에 관한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 결과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하여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서비스개선지역(이하 “교통서비스개선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서비스개선지역의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교

통서비스개선대책(이하 “교통서비스개선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광역 교통서비스개선지역: 국가적 차원에서 교통서비스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지역 교통서비스개선지역: 지역적 차원에서 교통서비스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교통서비스개선대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제1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우선 반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1조(국민 등의 의견수렴)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이 법에 따라 교통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교통위원회·지방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로서 행정청이 아닌 자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35조(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교통 관계 법령에 따른 지침·결정·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으로 본다.

제4조(국가교통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및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는 각각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및 제16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본다.

제5조(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 및 제110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및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각각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및 제16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 및 제110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및 지방교통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사항은 이 법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 및 지방교통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본다.

제6조(국가교통위원회 및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

107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이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이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이 법 제16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8조에 따른 국가교통실무위원회는 이 법 제14조에 따른 국가교통실무위원회가 새로 구성 및 운영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8조에 따른 국가교통실무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이 법 제14조에 따른 국가교통실무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8조(국가교통조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는 이 법에 따른 국가교통조사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를 “「교통기

본법」 제10조”로 한다.

②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를 “「교통기본법」 제10조”로 한다.

③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을 “「교통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으로 한다.

④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를 “「교통기본법」 제12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를 “「교통기본법」 제16조”로 한다.

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를 “「교통기본법」 제12조”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를 “「교통기본법」 제16조”로 한다.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교통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국가교통조사”를 “「교통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이하 “국가교통조사”라 한다)”로 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제6장(제106조부터 제11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20조제3호의2를 삭제한다.

⑦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8호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교통기본법」”으로 한다.

⑧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3항제4호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를 “「교통기본법」 제12조”로 한다.

⑨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를 “「교통기본법」 제10조”로 한다.

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6조제2호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를 “「교통기본법」 제10조”로 한다.

⑪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를 “「교통기본법」 제10조”로 한다.

⑫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를 “「교통기본법」 제12조”로 한다.

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를 “「교통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를 “「교통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⑭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을

“「교통기본법」 제10조”로 한다.

⑮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제4호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를 “「교통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⑯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를 “「교통기본법」 제12조”로 한다.

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제5호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교통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를 “「교통기본법」 제12조”로 한다.

⑱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를 “「교통기본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를 “「교통기본법」 제12조”로 한다.

⑲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를 “「교통기본법」 제12조”로 한다.

⑳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교통기본법」 제10조”로 한다.

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제4호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를 “「교통기본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교통기본법」”으로 한다.

㉒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교통기본법」”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5호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교통기본법」”으로 한다.

㉓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전단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를 “「교통기본법」 제12조”로 한다.

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0조제4항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를 “「교통기본법」 제16조”로 한다.

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를 “「교통기본법」 제12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를 “「교통기본법」 제16조”로 한다.

㉖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를 “「교통기본법」 제10조”로 한다.

㉗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 기간교통망계획, 같은 법 제6조에 따른”을 “「교통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의2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를 “「교통기본법」 제10조”로 한다.

㉙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를 “「교통기본법」 제10조”로 한다.

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를 “「교통기본법」 제16조”로 한다.